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양승이 의원 발의】



2025. 03. 24.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90호로 2025년 3월 10일 양송이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시비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3.12.~2025.3.1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 “공모사업”이란 국가 등에서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일방적 재정 의존 행태를 억제시키는 긍정적 취지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공모사업은 보조사업의 한 형태 중 공모¹⁾에 의거 지자체의 신청이 선행되는 상향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회 보고를 통해 구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區)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짐.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조례안의 체계

1) 공모(公募):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함.(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등 조례 전체의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와 추진 사항, 안 제7조는 의회 보고 의무, 안 제8조에서는 표창 등에 관한 내용,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여 총 9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나.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추진

제 정 안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공모사업의 구체성 및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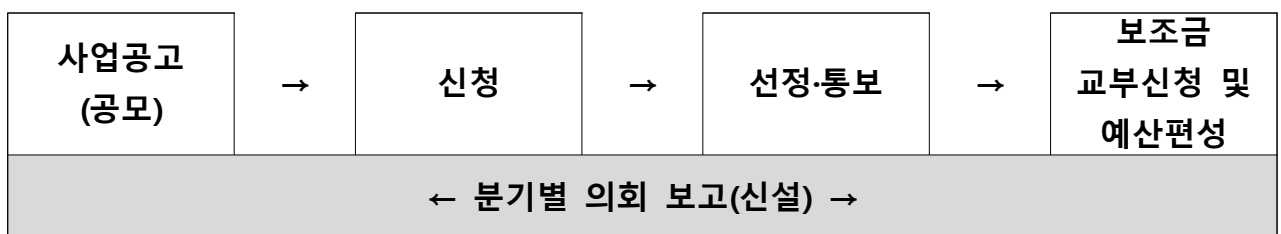
- 안 제5조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검토 해야하는 내용을,
- 안 제6조는 추진 상황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역할과 외부 전문 기관의 협조 추진 가능 여부를 규정하고 있음.

다. 의회 보고

제 정 안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이 선정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안 제7조에서 구비 부담 사업은 분기별로 의회 보고 의무를 가지며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즉, 현행 공모사업의 진행 절차²⁾에서 ‘의회 보고’ 절차를

2) 【공모사업 진행 절차】



신설하려는 내용임.

- 서울시 내 타 자치구의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공모사업 조례의 의회보고 의무 규정은 총 8개 자치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본 조례의 분기별 의회 보고 의무 규정은 집행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견제권을 발휘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의회보고 규정 현황】

공모사업 관리조례	의회보고 규정 유무			사업비 기준 유무	
	신청 前	예산 편성 前	미규정	유	무
8개	2개	3개	3개	3개	5개

라. 표창 및 포상

제 정 안
제8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안 제8조**는 공모사업 선정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³⁾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지방의회에,

3)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각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침해하는지 여부가 그 쟁점일 것임.

- 우선, 「지방재정법」 제34조4)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도록 하며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제47조제1항제2호), 예산의 의결(제142조), 결산(제150조) 등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며 「지방자치법」 제51조5)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 심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려움.(법제처 2021.3.4. 의견21-0034 참조)
- 또한, 동 조항은 보고 후 반드시 의회 의결·승인을 받도록 하는 구속력을 부여하지도 않고,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권 행사

4)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5)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지도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예산편성권 행사를 침해한다고 보기에 어려움.(법제처 2023.6.23. 의견 23-0237 참조)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구(區) 공모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 및 운영 절차의 규정을 위해 사전 검토 사항을 법제화시켰으며 총괄부서의 지정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정례화된 보고 일정 확립으로 인해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또한 의회 보고 규정은 의회의 의결·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폭넓은 견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를 같이 함.
- 즉,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법」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권은 서로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참 고 자 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